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서의 법률 전문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egal Special Aided System by Way of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for Stable Growth of Small Business

김원규(법률실무과)

Weon-Gyu Kim(Dept. of Law)

Key Words: 중소기업(small business), 산학협동(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법률전문지원시스템
(legal special aided system),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ABSTRACT: There are about 3 million corporation in Korea and about 99% of them are small business. Therefore, the Korean economy is greatly influenced by small business. So a great deal of actions are being taken to support them. In this regard, the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but not sufficient, especially in legal matters. Many small business need legal aided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legal aided system for small business. This system mainly provides legal advice and education through on-line or off-line for them.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는 약 300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99%인 295만여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¹⁾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은 물론 기술 및 경영분야의 지원을 위한 각종 산학협동 시스템 또한 잘 정비·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분야의 지원을 위한 산학협동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창업과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통상의 기업운영에서는 물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가맹사업거래 또는 법인 설립의 경우, 그리고 타 기업과의 M&A 또는 영업 양·수도를 할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 및 세제 등에 관한 복잡하고도 일상 업무와 친근하지 않은 각종의 법률구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영업상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은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에 있어서 곧 바로 중소기업의 목덜미를 옥죄릴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에 의한 일부 형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분쟁은 커녕 국내분쟁에 대비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률분야에 있어서도 산·학·관 협력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제조물책임법, 지적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교육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내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날이 다변화·복잡화 및 국제화의 일변도를 치닫고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날 법률분야의 지원시스템은 산학협력의 중심에 놓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 지원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률지원의

1) 통계청, 「2000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1.12).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나 보통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요성 내지는 그 필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법률고문은 물론 내부 법률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한 점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절실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법률분야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산학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법률문헌 및 중소기업의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 등 문헌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후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 외국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대응

2.1 미국

2.1.1 중소기업의 현황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모험기업으로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제일의 벤처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²⁾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으로 500명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다.³⁾

1998년 12월 말 현재 미국의 전산업 기업체⁴⁾ 수는 5,369,068社(종업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99.7%인 5,353,624社, 대기업이0.3%인 15,444社)이며, 전산업 사업체⁵⁾ 수는 6,612,721社(종업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87.7%인 5,798,936社, 대기업이12.3%인 813,785社)⁶⁾로 나타났다.

2.1.2 산학협력 실태

(1)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타운⁷⁾의 산학협력

실리콘밸리에는 약 7000개의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는 대학 내 벤처기업 지원과 산학공동연구에 의한 결과물의 산업체로의 이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등을 운영하고 있다.⁸⁾

(3) 그밖에도 엔젤 등에 의한 경영지원 및 법률지원 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에 의한 법률교육 등 법률지원은 활발하지 않다.

2) 1978년 투융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인하 등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벤처붐이 조성되었다.

3) 자료: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4) 기업체는 한 산업안에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되는 모든 사업체들의 집합체.

5) 사업체는 급여가 발생하는 최소단위.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185면.

7) 샌프란시스코 연안 일대 즉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와 스탠포드대학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서 특히 팔로알토(Palo Alto)에서 산호세(San Jose)를 중심으로하는 약 80km²의 광활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지역.

8) William D. Bygrave·Jeffrey A. Timmons, Venture Capital at the Crossroa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pp.236.

2.2 일본

2.2.1 중소기업의 현황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르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을 가리킨다(中小企業基本法).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전산업 사업체 수 6,502,924社 중에서 중소기업은 98.9%인 6,433,557社(대기업은 1.1%인 69,367社)⁹⁾로서 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대국 일본을 이끌어 가는 중핵임을 바로 알 수 있다.

한편 2001년 3월 말 현재 일본의 전 사업체 중에서 법인형태의 사업체의 구성을 보면, 우선 일본 내 회사 총수가 3,054,200社로서 우리나라의 전 사업체 수와 거의 비슷하며, 이 중에서 주식회사는 1,215,600社, 유한회사는 1,737,000社,¹⁰⁾합명회사가 19,200社, 합자회사가 82,400社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유한회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96.66%(1,175,100社)가 자본금 1억円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¹¹⁾

2.2.2 산학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1) 서

일본도 일찍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일본은 都道府縣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즉 都道府縣이 운영하는 中小企業支援센터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 및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으로서의 공동연구나 기술 및 경영분야의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 都道府縣과 일부 大學에 의한 산·학·관 협력방안으로서의 공동연구나,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법률교육은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하다. 여기서의 법률교육은 제조물책임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 및 기타 기업법률 등 주로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³⁾

(2) 東京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

東京은 東京商工會議所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술 및 경영 지원을 함은 물론 법률분야의 상담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법률지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중소기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법률 강좌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財團法人 北海道中小企業總合支援센터

9)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책, 192면.

10) 1996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가 도입되자 급증.

11) 岡本政治 外, 會社訴訟をめぐる理論と實務, (中央經濟, 2002), 3面.10억円 이상의 대회사는 1만社 정도에 불과하다.

12) 중소기업지원센터는 都道府縣 또는 政令指定都市마다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약 60여개소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13) 松田修一, ベンチャー企業の經營と支援, 日本經濟新聞社, 1996, 56面.

기본적인 기술과 경영지원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법률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원은 법률상담을 주로 하며, 중소기업자와 창업준비자를 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財團法人 滋賀縣産業支援프라자

中小企業診断士, 辯護士, 技術士, 公認會計士, 社會保險勞務士, 建築士, 辨理士, ISO9000・14000 等 審査委員, 情報處理技術者 등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애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비용 중 일부는 縣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5) 법률지원시스템의 문제점

각 都道府縣에서 민간 법률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법률상담은 실제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담일과 상담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다. 상담일은 대부분이 주 1일, 상담시간은 건당 30분~50분에 불과하다. 둘째로는 都道府縣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은 소송대리 전까지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현저하게 좁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법률상담소가 변호사 영업의 전진기지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률 상담이 사건 발생 전 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사 후에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이는 중소기업자의 무관심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원기관 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운영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의한 법률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도, 부정기적으로 그리고 일회성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부분인 바 역시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있을 때마다 都道府縣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실시되는 법률교육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다.

2.3 대만의 중소기업현황과 산학협력의 실태

대만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르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시종업원 수가 200명 이하(자본금 규모로는 대만화폐 6천만원 이하)인 기업을 가리킨다(中小企業發展條例).

한편 대만은 전산업 사업체 수 1,024,360社 중에서 중소기업이 98%인 1,003,325社(대기업이 2%인 21,035社)¹⁴⁾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우리보다 앞선다. 그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들 중 상당부분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하여도 공동연구는 물론 대학에 의한 중소기업에의 기술, 경영, 법률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대응

3.1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의 현황

14)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책, 201면.

우리 나라는 전산업 사업체 총수 3,013,417社(총 종사자 수는 13,604,274명) 중에서 중소기업 수가 270만여社(비법인단체 등은 제외)로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성을 사업체의 조직별로 보면, 회사법인 181,259社(종사자 수 4,817,673명), 개인사업체 2,674,780社(종사자 수 6,645,245명), 회사 이외의 법인 79,860社(종사자 수 1,823,197명), 비법인단체 77,518社(종사자 수 318,159명)로서 개인사업체가 절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중 거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체임을 알 수 있다.¹⁵⁾

한편 이들 사업체 주에서 서울에 소재하는 사업체는 719,536社(종사자 수 3,574,824명),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은 488,147社(종사자 수 2,416,082명)로서 전사업체 중에서 약 40%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2 산학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산학협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연구, 기술자문, 경영자문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청은 금융 및 인력지원, 기술 및 경영 자문, 그리고 법률무료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행하여진 동법의 홍보 및 그 대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정부와 중소기업청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일부 교육기관은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에 따라 동법의 홍보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중소기업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제조물책임법이 어떤 것이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전혀 미동도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즉 이는 중소기업청의 극히 형식적이고 단기성·1회성·이벤트성 짙은 프로그램의 운용과 중소기업의 무관심·무원칙이 빚은 작품이다. 사실 중소기업청의 홍보 결과 제조물책임보험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그들 중소기업이 동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생산방식을 고수하면서 사후적으로 보험금에 당해 문제해결을 의지해보겠다는 지극히 나태하고 지극히 나약한 대응책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벤트성 상담으로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3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적 안정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기업관련 법률과 부딪치게 된다. 이때 법을 알고 부딪치는 경우와 모르고 부딪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법률분야의 실질적인 지원방법은 정부의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그리고 영업목적은 가지고 이벤트성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전문가의 지원보다는, 지원기관의 구성원들의 성의와 열의가 중소기업자들에게 꾸준히 전달되는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시간적 제약이 없는 법률상담이라고 생각한다.

15)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246社(333만명), 도소매업 916,685社(249만명), 숙박·음식업 607,718社(155만명), 운수업 265,598社(76만명), 공공부문, 개인서비스업 327,488社(74만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20,517社(32만명), 교육서비스업 102,802社(92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4. 중소기업과 법

4.1 서

본래 법은 '통치' 라는 개념과 '권리보호' 라는 개념의 양면성을 띤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법률은 중소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과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의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법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두 '규제' 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많은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력이 없다. 아니 그런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구체책을 강구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과연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중소기업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4.2 중소기업 관련법

4.2.1 헌법(123조 3항, 5항)

우리 헌법은 제9장(119조 이하)에 경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헌법은 경제헌법으로서 선진국의 헌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제123조는 농업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후술하는 각종의 중소기업 관련 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¹⁶⁾

4.2.2 중소기업기본법(1966.12.6)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한 헌법과도 같은 법이다(동법 제1조). 이에 따라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994. 12, 22)

이 법은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고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와 中小企業의 經營基盤을 확충(협동화, 환경오염저감, 지도·연수)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심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2.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1961. 12. 27)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

16)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을 복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동법은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및 공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률로서, 협동조합조직(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4.2.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995. 1. 5)

이 법은 中小企業者의 事業活動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中小企業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企業間 協力을 增大시켜 分業에 의한 상호이익을 增進하고 産業의 國家競爭力向上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본 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한 법률로서,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대기업참여 제한, 사업조정신청), 기업간 계열화,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사업 조정 심의회, 중소기업계열화 촉진 심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2.6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소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1986. 5. 12)

이 법은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創業된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여 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産業構造의 構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절차간소화, 창업지원심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7. 4. 10)

이 법은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촉진하고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을 도모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공장등록 특례, 어음보험제도, 금융지원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7. 28)

이 법은 기존 企業의 벤처企業으로의 轉換과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여 우리 産業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벤처기업투자, 기술개발지원계획수립,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2.7 지방중소기업육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1. 7)

이 법은 國土를 합리적으로 이용·開發·보전하기 위하여 地方의 發展潛在力을 開發하고 民間部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地域開發事業이 효율적으로 施行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地方中小企業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人口의 地方定着을 유도하고 地域經濟를 활성화시켜 國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지역협동기능지원센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도중소기업기관협의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6. 11)

이 법은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의 緩和 및 特例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원활한 企業活

動을 도모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창업 및 공장설립규제 완화, 고용의무의 완화, 수출입규제 완화,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2.8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1) 중소기업은행법(1961. 7. 1)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법(1974. 12. 31)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988. 12. 31)

이 법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을 設立하여 技術信用保證制度를 定着·발전시킴으로써 新技術事業에 대한 資金의 供給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제정되었다.

4.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2. 5. 제정, 동 11월 1일 시행)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2.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제정되었다.

4.2.11 제조물 책임(P.L)법

이 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제정되었다.

4.2.12 상법 및 증권거래법

상법은 기업조직과 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상행위, 회사, 해상 및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有價證券의 발행과 賣買 기타의 去來를 公正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상법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조직과 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이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이 있는 법으로서 중소기업 중 상장 또는 협회 등록법인에게는 중요한 법이다.

4.2.13 민법 및 민사소송법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물권, 채권 및 신분법을 포함하며, 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특히 민법은 중소기업의 재산관계 및 계약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있는 법이며, 민사소송법은 상사분쟁에 있어서 그 절차상 적용이 있는 중요한 법이다.

4.2.14 각종 세법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며, 이러한 조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 세법이다. 특히 세법 중에서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은 중소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있는 법률로서 상시 필요한 법률이다.

4.2.15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을 비롯하여 의장법,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 지적재산권법은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재기와 도약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주는 법률이다.

4.2.16 결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다수의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 법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기업의 유지는 물론 기업이익의 향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법규들에 관하여 무관심이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태도를 일변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안으로서는 영업목적을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중소기업자들에게 꾸준히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시간적 제약이 없는 법률상담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률분야의 산학협력 방안

5.1 법률지원시스템의 구축

대학과 중소기업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적 무관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전술한 각종 법률의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만이 중소기업의 살길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법률교육을 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즉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법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인을 만든다. 둘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즉 중소기업이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대학이 먼저 법적 애로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셋째,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즉 법률문제에 관한 관례연구 세미나를 비롯하

여 현안문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자에게 법적 소양을 갖게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임원 및 법률담당직원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계절학기 및 정규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이나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장소에서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5.2 법률지원시스템구축의 효과

법률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우선 중소기업자는 법적 소양을 갖추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한 각종의 관련 법률을 습득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어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법률전문지원시스템의 수요와 국내·외의 상황을 조사·검토·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관련 법률의 분석·정리가 가능하며, 아울러 관련 사례 등의 조사·분석을 병행한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열악한 법률분야의 지원 내지는 사내 법률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개발한 교재는 우리 과는 물론 우리 학교 전 과에 공통된 중소기업관련 교재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효과는 전문대학 법률실무과를 비롯한 사회실무계열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우리학교 및 우리 과의 취업률과 입시경쟁율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5.3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의 비전

법률실무과는 법률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가동함으로써 금후로는 중소기업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양측의 기대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 후 양측은 중소기업 법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합의하여 (1) 법률상담 (2) 공동연구 (3) 위탁교육 (4) 현장실습 (5) 교재개발 (6) 인재과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사회계열 학과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산업체위탁생의 위탁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임원 및 법무담당자의 재교육 등도 현실화될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과 법률실무과의 홍보강화로 취업률과 입시경쟁율이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컬티의 무조건적인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학내 인센티브, 중기청·산자부·과기부·교육부·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경제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그 보호·육성을 위한 법규나 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규나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산·학·관의 협력에 의한 지원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관의 협력은 기술이나 경영 등에만 국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법률분야의 지원은 기술이나 경영 등의 지원과 함께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중소기업의 여건상 거의 대부분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분야의 실질적인 지원방법은 정부나 일부 전문가의 실적 위주의 형식적이고 영업목적을 가진 이벤트성 법률상담이나 교육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성의와 열의가 중소기업자들에게 꾸준히 전달되는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시간적 제약이 없는 법률상담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각 대학의 법률 관련학과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형식으로 성의와 열의가 담긴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책임이며 또한 권리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1) William D. Bygrave · Jeffrey A. Timmons, Venture Capital at the Crossroa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 (2) Cliff Pratter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Fir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3) Donald F. Kurakato · Richard M. Hodgetts, Entrepreneurship, the Dryden Press, 1995
- (4) 松田修一, 벤チャー企業の經營と支援, 日本經濟新聞社, 1996
- (5) 柳孝一 · 山本孝夫, 벤チャー-마네지먼트의變革, 日本經濟新聞社, 1996
- (6) 日本合同ファイナンス, 벤チャー-캐피탈의實態と戰略, 東洋經濟新聞社, 1996
- (7) 西澤昭夫, ビジネスエンジェルの時代, 東洋經濟新聞社, 1997
- (8) 森下正 · 百賴惠夫, 벤チャー-型企業の經營者像, 中央經濟社, 1997
- (9) 岡本政治 外, 會社訴訟をめぐる理論と實務, 中央經濟, 2002, 3面.
- (10) 함철훈, 벤처기업법, 신우사, 1998
- (11) 김중재, 중소기업경영론, 박영사, 1995
- (12) 이철송, 현대회사의 소유구조의 변화와 회사법이론의 재정립, 한국개발원, 1995
- (13) 홍성도, 벤처비지네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1997
- (14) 진홍렬, 증권거래법 해설, 넥서스, 1997
- (15) 이동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 1997
- (16) 송영식 · 이상정 ·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8
- (17)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 1994
- (1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185면
- (19) 통계청, 「2000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1.12